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8명(4급 1명, 5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정원에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제38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19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한시정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343”을 “341”로 하고, 일반직 계 “342”를 “34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1”을 “32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90”을 “9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90”을 “9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72”를 “882”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농촌진흥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제42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농업공학부) ① (생 략)	제20조(농업공학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u>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u> 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u>정원(「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 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 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19명</u> 을, 3	② ----- ----- ----- -----. ----- ----- <u>20명</u> -----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42조(한시정원) ①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

제42조(한시정원) 해외농업기술개

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
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
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3</u>	<u>341</u>	-2
•	•	•	
•	•	•	
일반직 계	<u>342</u>	<u>34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1</u>	<u>329</u>	-2
•	•	•	

[별표 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90</u>	<u>900</u>	+10
일반직 계	<u>890</u>	<u>900</u>	+10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72</u>	<u>882</u>	+1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